

1. 개정이유

전국적으로 긴급을 요하던 심야택시난 대책('22.11) 시 무분별한 택시부제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택시부제의 운영·연장 여부를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, 현재는 택시난이 심야시간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지역의 여건(택시 수급상황 및 지역 택시업계 갈등 조정 등)이 주요한 판단요소임에 따라 택시부제의 운영, 변경 및 해제 등을 관할관청(지자체)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관할관청이 수립·시행하는 운영계획에 택시부제에 관한 사항 포함(안 제3조)

관할관청이 수립·시행토록 하는 ‘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’에 택시부제 운영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규 포함함

나. 택시부제 운영·연장 등의 결정 권한을 관할관청으로 변경(안 제9조)

관할관청이 부제를 운영·연장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가 운영하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, 관할관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

다. 택시부제 운영여부·방식에 대해 권고 근거 마련(안 제9조)

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구역에 택시부제 운영여부·방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
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택시부제 운영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제9조제2항 중 “평가하고, 부제를 운영·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”를 “평가하여, 부제 운영 여부 및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 부제 운영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관할관청은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(이하 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 설></u> 3. (생략) ② ③ (생략) 제9조(택시부제) ① (생략) ② 관할관청은 택시 수급상황, 국민·택시업계·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부제를 운영·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「<u>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u><신 설></u> ③ ④ (생략)	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택시부제 운영,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 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(택시부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평가하여, 부제 운영 여부 및 방식 등을 결정하여야</u>----- -----. ③ <u>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 부제 운영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④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